제안차량 운행허가 요령

대구국도관리사무소

차량의 운행제한 및 허가제도에 대해 평소 고객님들께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문답식으로 알려드리니 운행허가 신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관계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08년 개정된 도로법 및 변동사항 반영함)

운행제한(과적) 단속 차량은 ?

◆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길이 16.7m** (연결·굴절차 19.0m), **너비 2.5m, 높이 4.0m**(고시한 노선 4.2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항 목	기 준	비 고
총중량	40톤	교량 등 도로구조물 보호
축하중	10톤	도로 포장 파손방지
길 이	16.7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회전반경)
너 비	2.5m	회전반경 확보 및 도로교통 안전확보(회전반경)
높 이	4.0m(4.2m)	육교 등 도로횡단시설 보호

경상남북도 일원의 국도이용 차량의 운행제한 높이 완화(4.0→ 4.2m)

2008.5월 9일 이후부터 경상남북도 일원의 일반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편의 및 원활한 물류소통을 위하여 차량 운행제한높이를 현행 4.0m에서 **4.2m로 완화**(국도58호선,국도67호선 제외)한 점 참고하세요

운행허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도로법 제20조에 의거하여 도로관리청장이 운행을 허가하고 있으며, 국도는 국토해양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는 도지사,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관청입니다.

운행허가 신청서는 시도에서 출발하는 제한차량인 경우 해당 시도에서 접수 발급하고 또한 경상북도 시(市)구역 국도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에서, 군(君) 읍(邑) 면(面) 구역 국도에서 출발하는 경우 해당지역 국도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비산동에서 출발하는 경우 대구광역시시설안전관리사업소로 신청하시고 칠곡군 동명면 국도5호선에서 출발하시면 대구국도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시고, 경상북도의 내의 지방도에서 출발하시면 경상북도 도로철도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운행허가 신청 및 출발지 관할청에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경북지역 주요 도로관리청 >>

· 대구국도관리사무소	☏ (053)605-6063
·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	☏ (053)589-5835
· 경상북도 - 건설방재국 도로철도과	☏ (053)950-2256
· 김천시 - 김천시청 건설과	☏ (054)420-6338
· 구미시 - 구미시청 건설과	☏ (054)450-6311
· 상주시 - 상주시청 건설사업팀	☏ (054)537-7542
· 칠곡군 - 칠곡군청 건설과	☏ (054)979-6331
· 고령군 - 고령군청 건설방재과	☏ (054)950-6336
·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사	☏ (053)850-9353

운행허가 신청서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각 도로관리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아래의 구비서류는 공통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시기전에 관할도로관리청에 꼭 문의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

서류명 \ 신청구분	신규신청	변경신청	
		운행허가기간 연장의 경우	노선변경시
1.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1부	1부	1부
2.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1부	-	-
3. 차량 중량 계산표	1부	-	-
4. 운행노선도(1/500,000지도)	1부	-	1부
5.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 -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시)	 (N)부 (N)부	-	 (N)부 (N)부
6. 기타 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	도로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부수		

비고

1. (N)은 운행 노선중에 있는 도로 관리청(기관)의 수
2.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 3의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구조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1~6까지의 서류 중 5는 제외함.
3. "변경 신청"이라 함은 동일 차량에 동일 종류의 화물을 계속하여 운송하는 경우로 신규신청, 허가한 기관에 변경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
4. 차량 중량 계산표는 차량 형태별 축하중 계산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근거나 실제 측정한 계근 중량표를 첨부
5. 허가 받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의 구조 또는 화물의 특수성의 범위는 건설 기계 또는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수출입용 기계류, 컨테이너 화물 및 생산 공장에서만 분리·조정 가능한 제품 기타 이와 유사한 물건

과적차량운행으로 단속되었을 때 처벌대상은 누구인가요?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대상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도 포함)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법 제98조제1항2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법 제98조)

선의의 운전자 보호를 위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운전자가 그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는 처벌하지 아니하나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도로법 제98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합니다.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조항]

(도로법 제100조 양벌규정)

단속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시 축조작 등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 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단속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시 적재량 측정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동승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도로법 제98조)

◆ 적재량 측정시 측정을 방해하거나 재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도로법 제97조)

※ 2004.1 도로법이 개정이후 축조작 등으로 적재량 측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는 2년이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중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적은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인 만큼 근절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축조작 등은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도로를 운행 중 타 도로관리청의 과적단속반에 의해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경찰서의 허가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허가이므로 도로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와 출발지 도로관리청에 각각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로법상의 운행허가』는 육교, 커브구간 등 도로시설과 적재차량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로서 최장 1년 단위의 서류검토 허가이고, 『도로교통법상의 적재·통행허가』는 화물의 적재·결속상태 등 차량의 안전운행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허가로서 차량의 매 운행시마다 실시하는 실물확인 허가인 점에서 각각 다릅니다.

운행허가 신청 발급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도로관리청에서 징수하는 운행허가 신청수수료는 신청경로 1건당 **수입인지 1매(5,000원)**이며, 신청 및 발급에는 어떠한 추가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운행허가 신청 대행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로 인한 피해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수수료는 경로당 수입인지 1장(5,000원)인 점에 유의하세요

인터넷으로 운행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데?

운행허가 업무 간소화 및 기간단축을 위해 운행허가웹서비스프로그램(http://www.ospermit.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셔서 운행허가를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하게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기타허가관련 자료 제출은 동일함)

※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하반기(11월 개시예정)부터는 네비게이션 같은 전자지도에 교량과 같은 횡단구조물 정보를 모두 등재하여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운행허가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있는 전자상거래방식을 도입 및 추진중에 있어 향후 편리하게 허가증을 발부 받을실 수 있습니다.

단속이 되었을 경우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가 난해한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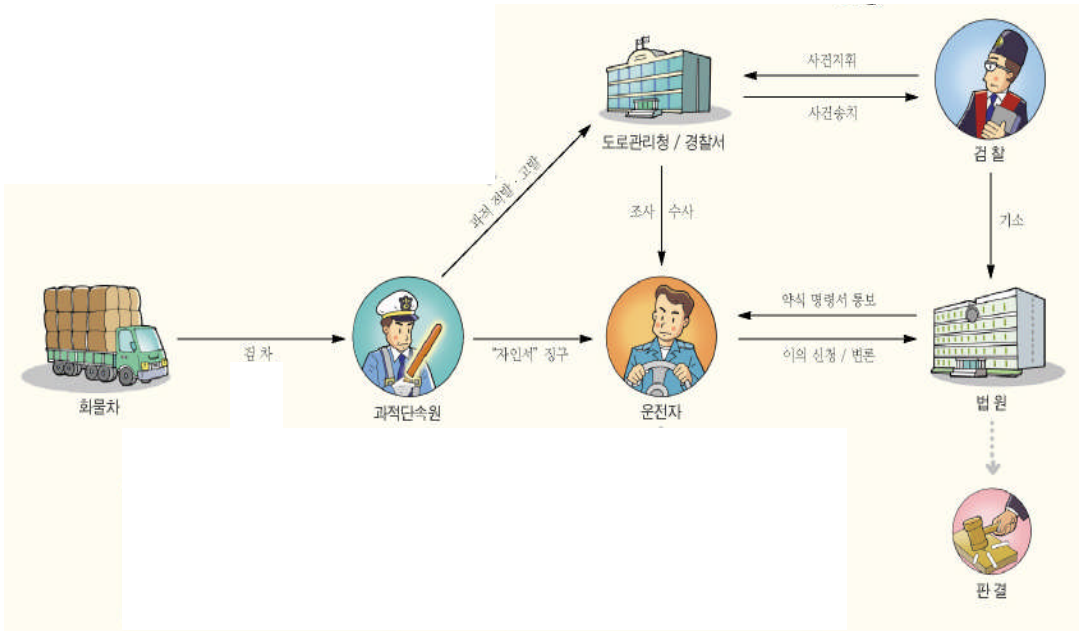

그 외 질문사항들

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와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는 당해 허가증을 발행한 도로관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행차량에 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장에서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되는 건설 기계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해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도로법에는 도로파손 및 도로의 구조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건설기계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 받은 운행경로중 일부가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 할수 없게된 경우는?

우회하는 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심사가 필요하므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1톤에 축을 하나씩 달아 27톤을 싣고 다니고, 18톤차에 축을 하나씩 달아 32톤이상을 싣고 다니고, 25톤차에 27톤이나 28톤을 싣고 다니는 것은 과적이 아닌지?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파손 예방과 도로 구조물의 보전을 위하여 제한차량의 기준(축하중10톤, 총중량40톤, 폭2.5미터, 높이4.0미터, 길이16.7미터)을 정하고 이를 초과했을때만 단속대상이 됩니다 .

계측오차의 적용기준은?

운행제한기준 중량의 1할 이내에서는 계측오차,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고발하지 아니할수 있으나 이때에도 운행제한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기준을 초과하면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기준을 초과하도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고 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단속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59조 및 동 시행령 제28조3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조리신고센터**
- **우편신고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감찰팀**
- **전화상담 : ☎ 02) 2110-8045 FAX : 02)504-9146**

◆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실 때에는**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3) 605 - 6063(김태형)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